

제 293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1972. 10. 10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 례

◎ 규 칙

제 1261 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

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..... 3

-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
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
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1972년 10월 10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261호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
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
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"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배
점기준표" 일련번호란중 "1,4,11,
12,13,15,18,20,26,27,34,35,36
및 41의 나,다"를 각각 삭제하
고, "19.정차위반"을 "19.정차
위반(노선차량제외)"으로 하고
"21.주,정차방법 및 장기정차위
반"을 "21.주,정차방법 및 장
기정차위반(노선차량제외)"으로
한다.

별표2 "취소처분기준표" 일련번호란
중 "13" 다음에 "14,15,16,17및
18"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
다.

일련 번호	위 반 종 별	적 용 법 조	처 분 기 준 내 용
14	과속, 추월	도 로 교 통 법 제 42 조, 18 조	취 소
15	차선 위반 (중앙선침범정지선 위 반 포함)	도 로 교 통 법 제 11 조 제 11 조의 2	취 소
16	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우선멈춤 위반	도 로 교 통 법 제 23 조, 26 조	취 소
17	정차방법 위반 (노선차량함함) (장기정차, 원거리정차, 이중정 차, 정류장의 정차, 대각선 정 차)	도 로 교 통 법 제 29 조	취 소
18	선착순 미출발행위 (정류장추월) 안전운전의 의무불이행	도 로 교 통 법 제 43 조	취 소

별표 3 "정지처분기준표" 일련번호란중 "5" 다음에 "6,7,8,9,10"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일련번호	종 별	적 용 범 조	처분기준내용
6	주 차 위 반	도 로 교 통 법 제 28 조	30 일 간 정 지
7	복장위반 및 취업포시판 미 부착	운 수 사 업 법 제 18, 19 조	"
8	금지구역내 경음기 사용	도 로 교 통 법 제 44 조 7 항	"
9	신 호 위 반	도 로 교 통 법 제 5 조	"
10	정원위반 (러쉬아워제외)	도 로 교 통 법 제 33 조	"

부 칙

이 규칙은 197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